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7117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황명선 · 이재관 · 박균택
이해식 · 김병주 · 강득구
백선희 · 박용갑 · 손명수
김현정 · 이학영 · 박홍배
박 정 · 박정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래 국가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1973년 유신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현행법상 해군에 예속된 체계로 운영되면서 장비 조달과 인사 관리 등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겪어 왔음. 특히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위기 상황에서 독자적인 대응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고, 전역자들조차 병적상 해군으로 분류되는 등 정체성 문제와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본 개정안은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준 4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군구조' 및 '합동성'의 법적 정의에 해병대를 공식 포함하고, 합동참모본부 내 공통직위 보직 비율을 해군·공군의 100분

의 50 수준으로 설정하여 확보하며, 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동부대 지휘관 보직 시 해병대를 해군·공군과 같은 수로 포함하여 순환 보직하도록 함으로써 국방 운영 전반에서 해병대가 독자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의안번호 제 171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군”을 “공군·해병대”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공군이”를 “공군·해병대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군”을 “공군·해병대”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공군본부 등”을 “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군”을 “공군·해병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공군”을 “공군·해병대”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비율로”를 “비율로, 해병대는 해군 또는 공군의 100분의 50의 비율로”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해군 및 공군은”을 “해군, 공군 및 해병대는”으로, “해군 또는 공군”을 “해군, 공군 또는 해병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기본이념) 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1. (생략)</p> <p>2.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해군·<u>공군</u>의 균형있는 발전</p> <p>3. ~ 5. (생략)</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군구조”라 함은 국방 및 군사임무 수행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군사력의 조직 및 구성관계로서 육군·해군·<u>공군</u>이 상호 관련되는 체계를 말한다.</p> <p>4.·5. (생략)</p> <p>6. “합동성”이라 함은 첨단 과</p> | <p>제2조(기본이념)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공군·해병대</u>----- ---</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u>공군·해병대가</u>----- --.</p> <p>4.·5. (현행과 같음)</p> <p>6. -----</p> |

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전쟁의 양상에 따라 총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9조(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 ① · ② (생략)

③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장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합동직위에 근무할 수 있는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참모차장의 직위에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장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병과·특기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천 또는 제청하여야 한다.

제23조(군구조의 개선) 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본부 등 군 상부 조직은 문민기반 위에서 통합전력이

-----공군·해병대-----
-----.

제19조(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

제20조(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

제23조(군구조의 개선) ① -----

-----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개선·발전시
켜야 한다.

② (생략)

③ 합동참모의장은 합동작전능
력 및 이와 관련된 합동군사
교육체계 등을 개발·발전시키
고,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있어
서 각군 참모총장과 원활한 협
의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
관에게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의 기능
및 합동성에 관하여 조정을 건
의할 수 있다.

④ 각군 참모총장은 각 군 고
유의 전문성을 유지·발전시키
되 합동성의 강화를 위하여 그
기능 및 조직을 정비하고, 중간
지휘체대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하여 단위부대의 전
투능력과 작전의 효율성을 증
대시켜야 한다.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공군·해병대-----

④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비 병력은 각 군별로 최고의 전력 체계를 유지하고, 육군·해군·공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구성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① · ② (생략)

③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생략)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①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

-----공
군·해병대-----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비율로, 해병대는 해군 또는 공군의 100분의 50의 비율
로-----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① -----

해군, 공군 및 해병대는-----
----해군, 공군 또는 해병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